2022 내부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

1. 감사대상 기간: 2022.1 ~ 2022.12. (2022학년도)

2 서면 및 실지 감사 기간 : 2023.01.04.(수) ~ 01.17.(화)

3 감사 범위 : 직제표 상 전체 부서 행·재정 업무 전반

4 감사 인원 : 총 5명(구문모교수, 박철수교수, 지준호부장, 길은아과장, 이영주과장)

5 감사 결과

가. 형태별 건수

구분	전년도 감사 지적 처분사항 미이행	행정부문	재정부문	비고
지적건수	0	3	1	

나. 전년도 내부감사 지적사항 처분에 대한 미이행 : 미이행 사항 없음

다. 세부 지적사항 및 처분(안)

지적 건명	지적내용	처분(안)
창업보육센터 보육부담금 연체 시 매뉴얼 미준수 [산학협력단 창업지원단(창업보육센터]	1. 보육부담금 운영 매뉴얼 업그레이드 필요 2. 보육부담금 연체 시 [보육부담금 매뉴얼]에 제시된 절차 미준수함. -3개월 이상 연체 시 공문 발송 -4개월 이상 연체 시 공문 및 내용증명 발송(계약해지 예정 안내) -1차 내용증명 발송 후 보증금 초과 연체 시 공문의 2차 내용증명 발송(계약해지 통보) -2차 내용증명발송 후 미납입시 공문의 3차 내용증명 발송(계약해지 최종통보) *현 미납액(38,142,430원) 매뉴얼에 따라 정산 진행 필요. **[보육부담금 운영 매뉴얼]**	보육부담금 운영 매뉴얼 재정비 및 보육부담금 연체 시 매뉴얼에 따른 이행점검
산학협력단 인사관리 규정 재정비 (산하기관 포함) [산학협력단]	산학협력단 정관 「제10조(교직원의 임용 등) ① 단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교직원 및 연구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, 임용기간과 보수 및 근무조건 등은 따로 정한다.」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, 2022년 산학협력단 및 그 산하기구 직원 8명을 신규로 채용 하면서 산학협력단 자체 규정이나 지침 없이 채용한 사실이 있음. 소속 교직원 및 연구원 임용 시 자체 인사규정을 마련하도록 함. **[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10조(교직원의 임용 등)]**	산학협력단 정관 제10조에 의거, 소속 교직원 및 연구원 임용시 자체 인사규정 마련

지적 건명	지적내용	처분(안)
외부강의등 신고 기간 미준수 [기획처 기획예산과]	청탁금지법 제10조 2항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(단,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 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보완 신고)하여야 하며, 이에 동 사항을 한라대학교 구성원에게 꾸준한 안내에도 불구하고. 2022년 1월~12월까지 외부강의 등 신고 총 197건 중 13건이 10일 경과 후 신고한 사실이 있음 **[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** **[학교법인 배달학원 및 한라대학교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제24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)]**	향후 외부강의등을 실시하는 경우 철저한 안내를 통해 기일 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.
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및 개선에 관한 규정 교내 규정과 불일치 [교무처 교무과]	교육과정 편성 시 교육과정 편성·운영 및 개선에 관한 규정에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, 고등교육법 및 대학평의원회 규정에서는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자문사항으로 규정되어있음. 대학평의원회 년도별 검토결과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자문사항으로 진행함.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및 개선에 관한 규정 개정 필요함. **[교육과정 편성·운영 및 개선에 관한 규정 제10조(교육과정 편성 관련 위원회 설치)]** **[대학평의원회 규정 제8조(기능)]**	교육과정 편성·운영 및 개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관련 규정 일치